

창원지방법원 2024. 10. 18 선고 2024가단117061 판결 [건물명도 등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울 담당변호사 허선무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4. 9. 27.

판 결 선 고 2024. 10. 18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,

가. 별지1 기재 부동산의 2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ㄱ 내지 ㄴ,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25㎡를 인도하고,

나. 2024. 3. 27.부터 가.항의 25㎡ 인도 완료일까지 월 300,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갑 제1, 2호증의 각 기재(가지번호 포함)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원고는 2022. 6. 24. 피고에게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선내 부분 25㎡(이하 ‘이 사건 건물’이라 한다)을 보증금 50만 원, 차임 월 25만 원(관리비 5만 원 별도), 기간 2022. 6. 27.부터 2023. 6. 26.까지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(이하 ‘이 사건 임대차계약’이라 한다), 원고는 2022. 6. 27.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고, 피고는 2024. 3. 27.부터 차임과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.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24. 6. 27. 기간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,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, 2024. 3. 27.부터 이 사건 건물 인도완료일까지 월 30만 원의 비율에 의한 연체차임(관리비 포함) 또는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박규도

별지